

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[☐ 신고서 ☐ 연장신고서 ☐ 철회신고서]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일
신고인	성명(대표자명)	생년월일(사업자번호)	
	전화	휴대전화	

* 여러 사람의 주거이전 신고(철회)를 한 번에 하는 경우에는 뒷면의 작성란을 이용합니다.

주거이전 내용	○ 변경 전		
	○ 변경 후		
	주거 이전일	우편물 전송기간(단위: 개월) ☐ 3(무료), ☐ 3(유료), ☐ 6, ☐ 9, ☐ 12	우편물 전송 개시일

철회 신청	주거이전 신고 접수번호	주거이전 신고 철회 시 반환금 입금계좌
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위와 같이 「우편법 시행규칙」 제110조에 따라 주거이전 [☐ 신고 ☐ 연장신고 ☐ 철회신고]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우체국장 귀하

* 기관·법인·단체 등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에 그 이름을 기입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대리인의 이름을 아래에 부기합니다.

신청인 제출서류	1.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2.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: 주민등록등본(개인),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단체 등), 공문서(국가 및 지자체) 등 3. 대리인 신고의 경우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: 위임장(공통),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(개인), 법인인감증명서(단체 등)	수수료 「우편법 시행령」 제44조에 따라 고시로 정한 수수료
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신청인의 정당여부 2.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을 통한 실제 주소 및 거소 이전여부

유의사항

- 우편물 전송 서비스는 주거이전 대상자에게 전송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제공하며 서비스 종료일 3일전까지 연장신고가 없으면 우편물은 3개월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발송인에게 반송되오니, 발송인에게 미리 이전한 곳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우편물 전송 개시일을 적지 않을 경우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이 지난 뒤(공휴일 제외)에 우편물 전송 서비스가 시작됩니다.
- 기관·법인·단체 등이 주거이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관·법인·단체 등의 명의를 적혀있지 않은 개인의 우편물은 전송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「민사소송법」 제185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변경한 송달장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신용(체크)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주거이전 철회신고 시 해당 카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우편물 전송 수수료

- 우편물 전송 수수료는 「우편법 시행령」 제44조에 따른 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」(고시)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. 상세한 내용은 우체국 내 게시판과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(www.koreapost.go.kr), 인터넷 우체국(www.epost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아래 표에 따른 동일권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신청 후 3개월까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- 개인과 단체(법인, 사업자 등)는 수수료를 달리 부과합니다.

권역의 구분

- ① 수도권권역(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 ② 강원권역(강원특별자치도)
③ 충북권역(충청북도) ④ 충남권역(충청남도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)
⑤ 전북권역(전북특별자치도) ⑥ 전남권역(전라남도, 광주광역시)
⑦ 경북권역(경상북도, 대구광역시) ⑧ 경남권역(경상남도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)
⑨ 제주권역(제주특별자치도)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대표 신청인과의 관계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(필수)

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1호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라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정보 내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 및 이용기간	동의 확인
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	업무처리 및 정당 본인 확인	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에 따른 보존기간 (1년)	[]

※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.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(선택)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신청인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 본인 확인필	담당자	팀장	책임자